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장난감도서관 관리부서 일원화로 시민의 편의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규정 명시(안 제5조)
- 나.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가입 규정 명시(안 제8조)
- 다. 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 기간 명시(안 제14조)
- 라. 재위탁 규정 수정 및 삭제 (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구미시 관내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장난감·도서·시청각자료”를 “장난감·도서·시청각자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회원가입 규정에 따른다.

1. 일반회원 :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
2. 시설회원 : 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

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연회비 가입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거쳐 3회에 한하여”를 “거쳐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”를 “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, “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”를 “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”으로

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설치)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(이하 “장난감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<u>구미시 관내</u>에 둔다. 다만,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기능)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영유아 <u>장난감 · 도서 · 시청각자료</u> 등의 구매 및 관리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5조(회원가입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구미시(이하 이 항에서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자,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(이하 “일반회원”이라 한다) 및 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(이하 “시설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설치) ----- ----- ---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</u>-----.</p> <p>제4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---- <u>장난감 · 도서 · 시청각자료</u>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회원가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회원가입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1. <u>일반회원 :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</u></p> <p>2. <u>시설회원 : 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</u></p>

제8조(연회비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 회원 20,000원, 시설회원 50,000원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③ (생략)

제14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

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,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단,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계약기간은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8조(연회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. 단, 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은 센터 연회비 가입으로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거쳐 -----
----- . --- 센터 및 금오 종합사회복지관 -----
----- 센터 및 금오 종합사회복지관의 -----
----- .

<삭제>

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 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취학 전 아동 대상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, 양육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로 재정소요가 예상됨(안 제4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4년부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초록별장난감도서관 관리부서를 이관(복지정책과⇒가족보육과)하여 지원 관리 일원화를 위한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며,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구미시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은 총 763,273천원으로 5년간 연평균 152,65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- 나. 1차년도 이후 운영비 매년 인상률 3%로 반영함.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144,000	148,200	152,525	156,980	161,568	763,273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-	-	-	-	-	-
도비	28,000	28,840	29,705	30,596	31,513	148,654
시비	112,000	115,360	118,820	122,384	126,055	594,619
민간	-	-	-	-	-	-
기타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	20,000
합계	144,000	148,200	152,525	156,980	161,568	763,273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강태옥(054-480-657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
합계	144,000	
인건비	71,436	· 급여 2,073,500원×2명×12월 = 49,764,000원 · 제수당 430,570원×2명×12월 = 10,333,680원 · 사회보험 472,430원×2명×12월 = 11,338,320원
운영비	42,464	· 장난감구입비 2,500,000원×12월 = 30,000,000원 · 장난감수리유지비 680,000원×12월 = 8,160,000원 · 사무용품비 80,000원×12월 = 960,000원 · 공공요금 231,000원×12월 = 2,772,000원 · 기타 572,000원×1식 = 572,000원
사업비	30,100	·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비 3,500,000원 · 홍보물 제작비 2,000,000원×4회 = 8,000,000원 · 프로그램비 등 1,550,000원×12월 = 18,600,000원

소 관 부 서		가족보육과
입 안 자	과 장	황 은 채
	팀 장	이 수 경
	담 당 자	강 태 옥 (480-6572)